

제 247회 임시회
2006. 2. 23(목)

검 토 보 고 서

조 례 명	발의의원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종갑 의원 외 8인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박종갑 의원외 8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5년 12월 8 일

나. 회부일자 : 2005년 12월 9 일

3.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의 명확하지 않은 농업인 단체의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변경하며,
-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제명 등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적용을 받는 단체명칭을 '생활개선회'를 '충청북도 생활개선회'로,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 충청북도 연합회'로, '4-H회'를 '충청북도 4-H연합회'로, '농업경영인회'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로, '여성농업인회'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로 하여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조)

- 단체별로 각 기금을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 4H연합회는 청소년단체임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법인인 충청북도 4H후원회에서 관리·지원하도록 함.
(안 제3조)
- 종전에는 농업인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각 단체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종전에는 각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하였으나, 회장으로 단일화 하여 중복 참석하는 불편을 해소함.
(안 제5조)
-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함.(안 제10조)
- 원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 운용의 투명성을 증대하였으며, 각 단체별 회원 회비를 별도의 운용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회비 납부 및 지출에 관한 사안들이 명료해져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의 회계관리의 기금출납원의 단서조항인 생활개선회 기금은 생활개선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금출납의 통일적인 기준 적용이 다소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본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 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